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(법률 제17521호, 2020.10.20. 공포)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승인 신청시 갖추어야 할 최소 재무건전성 기준을 명시하고, 기타 용어의 변경 등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사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규정(안 제11조의2)

- 1)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연도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평균사업비(보상비는 제외) 이상인 자
- 2)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
- 3)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
- 4)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이 BB- 이상이며, 일정 요건 해당자

나.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8조)

감정평가법 개정으로 ‘감정평가업자’를 ‘감정평가법인등’으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재무건전성)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"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"을 갖춘다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.

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(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)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(보상비는 제외한다) 이상인 자
2.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
3.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
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이 BB-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

가.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
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
나.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.5배 미만일 것
다.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
였을 것

②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
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
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8조 본문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2(재무건전성)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"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"을 갖춘다</u>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. <u>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(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)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(보상비는 제외한다) 이상인 자</u> <u>2.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</u> <u>3.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</u> <u>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5조의3에 따라</u>

제28조(공공시설의 귀속)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	<u>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이 BB-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</u> <u>가.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</u> <u>나.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.5배 미만일 것</u> <u>다.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</u> <u>②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제28조(공공시설의 귀속) ----- -----
--	---

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둘 이	-----
상의 <u>감정평가업자</u> (「감정평가 및	----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-----
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	-----
제4호에 따른 <u>감정평가업자를 말</u>	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을</u>
<u>한다</u>)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	<u>말한다</u>)이 -----
하는 방법에 따른다.	----- 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512